

첨부 1

표창 제외기준

(시민표창운영지침, 자치행정과)

*'19년 기준 적용

□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

- 음주운전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 횡령·유용, 성희롱, 성폭력 비위 등 주요
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(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)
-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
 - ▶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
 - ▶ 3년 미만 징역·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▶ 3년 미만 징역·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·금고의
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- ▶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
-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
 - ▶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
 - ▶ 「공정거래법」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 -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
 -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
 - ▶ 최근 3년간,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(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 - ▶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
 - 국세·관세 :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'3억원' 이상의 체납자
 - 지방세 :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(서울시) '1천만원' 이상의 체납자
-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(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)
※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'부서 표창 추천일'을 기준으로 함

일반적인 추천제한

-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
-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미만 근무자(사회적 이슈,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)
-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
-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, 순서대로,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
-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
-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

[시장표창 추천제한 사유]

- 1) 이증표창의 금지 : 동일 공적으로 이증표창 금지(표창조례 제6조)
- 2)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
- 3)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(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특별한 공적은 제외)
- 4)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
 - 가)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
 - 나)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다)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라)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
 - 마)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5)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
 - 가)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,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 - 나) ‘임원’이라 함은 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 - ※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『사업상 등기부 등본,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』
 - 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
 - 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 - 다) 다만, 상기 가)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- 6)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 - 가)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 - 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 - 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 - 다) 다만, 상기 가), 나)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- 7)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